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4 선고 2019가단52417 판결 [지급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4. 23.

판결 선고 2020. 5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5,760,970원과 이에 대하여 1999. 5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김홍도

별지